

의안번호	2206008
의 퇴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5.2.17.
추 계 번호	24D5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생계지원금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256억 7,800만원(연평균 651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합계	81,041	72,554	63,312	56,912	51,858	325,678	65,1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3(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은 현행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의3(생계지원금)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확대의 적용대상을 현재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고, 개정안 시행 전 기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함
-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율과 배우자사망률은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과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함
 - 2012년 이전 유배우자율 및 배우자사망률은 2013년 유배우자율과 배우자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법 제6조의3 및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¹⁾에 따라 2022년부터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표 4] 생계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	지원자 수(명)	월 지원단가(천원)	총지원금액(백만원)
2022	3,490	100	3,851
2023	3,505	100	4,204

자료: 국가보훈부

1) 국가보훈부 고시 제2024-7호

나.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완화(안 제6조의3)

□ 개정안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대상자의 확대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급대상) 추계기간 동안 75~79세 인원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을 추정

○ 2024년말 기준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75~79세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에 통계청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한 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추정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를 추정

－ 국가보훈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참전유공자 33.1%, 고엽제후유의증 21.1%임

[표 5] 생계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75~79세 인원	1. 참전유공자 인원(명)	41,304	29,282	15,793	7,521	1,640
	2. 고엽제후유의증 인원(명)	21,960	15,159	7,807	3,561	858
	3. 합계(명)	63,264	44,441	23,600	11,082	2,498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A. 참전유공자 인원(명)	13,671	9,692	5,227	2,489	542
	B. 고엽제후유의증 인원(명)	4,633	3,198	1,647	751	181
	C.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합계	18,304	12,890	6,874	3,240	723

주: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전유공자 33.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1.1%를 적용

2)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경우, 2024년 기준 만 75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추계기간 중 사망률을 적용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이 해가 지날수록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국가보훈부

□ (추가재정소요) 지급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04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요예산	21,965	15,468	8,249	3,888	868	50,4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안 제6조의3)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상자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추계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 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연령은 고려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경우 생계지원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증감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사망자 수를 추정한 후, 그에 따른 배우자수를 추정

- 유공자 사망자 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하여 해당년도의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한 후, 기 사망유공자의 미망인 수에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사망률 적용 후 신규미망인 수를 합하여 누적 미망인 수를 추정
- 국가보훈부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참전유공자 33.1%, 고엽제후유의증 21.1%)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를 추정

[표 7]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참전 유공자	사망자 수(A)	8,797	8,023	7,317	6,673	6,086
	신규 미망인 발생자 수($B=A \times \text{유배우자율}$)	6,343	5,785	5,276	4,811	4,388
	누적 미망인 수($C_t = C_{t-1} \times \text{사망율} + B$)	135,247	130,077	124,817	119,518	114,225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D = C_t \times 33.1\%$)	44,767	43,055	41,314	39,560	37,808
고엽제 유의증 환자	사망자 수(E)	2,693	2,728	2,763	2,799	2,835
	신규 미망인 발생자 수($F = E \times \text{유배우자율}$)	1,942	1,967	1,992	2,018	2,044
	누적 미망인 수($G_t = G_{t-1} \times \text{사망율} + F$)	21,154	21,408	21,666	21,929	22,197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H = G_t \times 21.1\%$)	4,463	4,517	4,572	4,627	4,684
생계지원금 대상자 수 합계(D+H)		49,230	47,572	45,886	44,187	42,4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10만원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수에 생계지원금 월 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752억 4,000만원으로 추정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49,230	47,572	45,886	44,187	42,492	—
월 지급단가(만원)	10	10	10	10	10	—
소요비용(백만원)	59,076	57,086	55,063	53,024	50,990	275,240

주: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256억 7,800만

원(연평균 651억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연령완화	21,965	15,468	8,249	3,888	868	50,437	10,087
배우자승계	59,076	57,086	55,063	53,024	50,990	275,240	55,048
합계	81,041	72,554	63,312	56,912	51,858	325,678	65,1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 적용 대상으로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였으며, 개정안 시행이전 기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